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2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561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12. 2.

판 결 선 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가 2013. 2.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882,070원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509,850원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425,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2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년 11월말경부터 [redacted]시 B에서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redacted]서장은 2012년 8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기간 중 개인회생·파산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가 합계 금액에서 변호사 보수로 명시된 금액만 신고하고, 송달료, 기타비용(인지대) 및 부채증명서 발급대행 출장비 등(이하 위 각 명목의 금원을 '출장비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407,558,000원(2008년 172,595,000원, 2009년 125,435,000원, 2010년 109,528,000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1)]

다. [redacted]서장은 위와 같은 확인 결과를 기초로 원고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소명하였다.

과세연도	미신고금액	소명내역			차액
		송달료	기타비용	출장비	
2008년	172,595,000	69,320,746	12,873,900	80,234,354	10,166,000
2009년	125,435,000	57,649,385	8,181,633	54,236,582	5,367,400
2010년	109,528,000	43,436,384	3,117,190	57,133,346	5,841,080
합계	407,558,000	170,406,515	24,172,723	191,604,282	21,374,480

(단위 원)

라. [redacted]서장의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

1) [redacted]서장은 세무조사 결과와 원고의 소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소명한 출장비 금액 191,604,282원(공급가액인 174,185,711원을 소득금액에 산입),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 21,374,480원(공급가액인 19,431,345원을 소득금액에 산입), 그리고 위와 별개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C 사무장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34,699,998원과, 원고

1) [redacted]서장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회생·파산 사건 관련 영수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보수금액, 인지대, 송달료 및 기타수수료를 모두 합한 금액 938,024,000원(2008년 402,745,000원 + 2009년 286,905,000원 + 248,374,000원)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가 합계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변호사 보수(부가가치세 포함)로 기재된 금액 합계 530,466,000원(2008년 230,150,000원 + 2009년 161,470,000원 + 2010년 138,846,000원)을 뺀 나머지 407,558,000원을 미신고 금액으로 보았다. 피고가 산정한 금액 내역은 별지 표 1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2

가 법원으로부터 환불받은 송달료 금액 합계 69,106,745원은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식대 등 경비 17,918,101원은 부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며 위 출장비 191,604,282원은 경비로 추인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64,184,70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한편 [redacted]서장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산정에서 경비로 추인된 출장비 191,604,282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상여로 보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16,518,332원(2008년 8,018,900원, 2009년 4,635,020원, 2010년 3,86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redacted]서장은 2012. 12. 3. 원고에게 증빙불비 출장비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산정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2. 7.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산정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882,07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509,85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425,080원) 합계 1,81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redacted]서장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구합908호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제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출장비라고 소명한 191,604,282원은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를 위해 부채증명원 등의 발급을 위한 금융수수료와 출장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위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채권자들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2

부터 받은 부채증명원의 수를 5,558건으로 확정하고, 1건 당 금융수수료 및 원고 직원 출장비가 1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합계 금액 55,580,000원에 해당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경하기로 하고 정당한 세액을 9,225,656원으로 산정하여 7,869,255원을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변호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사건 보수와 별도로 부채증명서 발급대행 출장비를 받고 있고, 위 금원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필수불가분의 비용으로서 부채증명서를 실제 발급받은 사무직원들에게 실비 변상 명목의 출장비로 전액 지급된다. 위 금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소송사무 수임 현황 및 일반적인 처리 절차

가) 원고는 민사·형사·행정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담 후 서면으로 위임약정을 하고, 착수금과 착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아 소송을 진행한다. 원고는 수임한 사건에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여비, 출장여비 등을 별도로 받아 법원에 접수하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내고 있다.

나) 원고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전담 직원을 통해 위임받아 1건당 변호사 보수로 50만 원과 부가가치세 5만 원을 받아 사건을 처리한다. 원고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관하여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등을 별도로 받아 법원에 내고 있다. 원고는 의뢰인이 직접 부채증명 등 관계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부채증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2

발급관계 비용을 별도로 받아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8년 419건, 2009년 290건, 2010년 251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 보수로 2008년 209,500,000원(419건 × 50만 원), 2009년 145,000,000원(290건 × 50만 원), 2010년 125,500,000원(251건 × 50만 원) 합계 480,000,000원을 받았다.

라) 원고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수임한 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채권자 수는 2008년 3,868명, 2009년 2,916명, 2010년 2,584명이다. 원고는 위 기간 채권자들로부터 5,558건의 부채증명원을 받았다. 위 개인회생·파산사건에 관하여 관련사건에서 제주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채권자 명단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확인한 금융수수료 금액은 합계 6,452건 중 확인된 4,229건에 대하여 14,885,000원이다.

2) 출장비 191,604,282원 관련

가) 원고는 [redacted]서장이 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2. 8. 28. [redacted]서장에게 "진술인(원고)은 의뢰인으로부터 순수 수임료뿐만 아니라 약정일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인지대, 증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일괄적으로 추산하여 함께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순수 수임료만 신고했고 일괄적으로 받은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 등은 차후에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산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하였다.",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사건 수임 명부 등을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없고, 인지대, 증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 등을 항목별로 구분한 사실도 없고 구분하여 기록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2

나) [redacted]서장은 2012. 9. 14. 원고에게 원고가 2012. 9. 5. [redacted]서장에게 제출한 개인회생·파산사건 비용지출내역과 개인회생·파산사건 출장비용 지출서의 내용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거나 원고가 제출시점에 당초 작성날짜를 소급하여 만든 문서라고 구두로 인정하여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전산출력지출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항공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조사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원고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24조(출장) 제1항 회사는 직원에게 업무상 사유 및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채권자 부채증명 발급 등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을 지시할 수 있다. 제3항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업무수행(채권자 부채증명 발급 등)을 위한 출장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기에, 위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비는 채권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10㎞ 이내 제주도 내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 1명당 20,000원, 10㎞를 벗어난 제주도 내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 1명당 30,000원으로 산정하고, 제주도 외 채권자의 경우 기본비용으로 채권자 1명당 30,000원 및 왕복 항공권비, 기타여비, 숙박비를 포함하여 출장비용을 산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2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edacted]서장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회생·파산 사건 관련 영수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보수금액, 인지대, 송달료 및 기타수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가 합계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변호사 보수(부가가치세 포함)로 기재된 금액을 뺀 나머지 407,558,000원을 미신고금액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원고가 출장비로 소명한 금액 191,604,282원을 금액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소득금액에 산정한 다음 이를 경비로 추인하는 대신, 그 금액이 일반적인 출장비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를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상여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관련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부채증명원의 수를 5,558건으로 확정하고, 1건 당 금융수수료 및 원고 직원 출장비가 1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합계 금액 55,580,000원을 제외하였다.

3) 이처럼 [redacted]서장은 원고가 소명한 내역을 기초로 하여 출장비를 191,604,282원으로 확정하고,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임한 개인회생·파산 사건 합계 960건의 채권자 수 (2008년 3,868명, 2009년 2,916명, 2010년 2,584명)와 원고가 발급받은 5,558건의 부채증명원 및 원고가 지급한 금융수수료 금액(6,452건 중 확인된 4,229건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2

대하여 14,885,000원)에 비하여 위 출장비는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의 업무형태, 출장내역, 그리고 앞서 살펴 본 원고 법률사무소 취업규칙의 출장과 관련된 규정 등을 근거로 제주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출장비 191,604,282원 전액을 출장비로 보기 어렵다는 [redacted]서장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는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뿐만 아니라 인지대, 증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일괄하여 받았고, 이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산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사건 수임 명부 등을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없고, 인지대, 증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 등을 항목별로 구분한 사실도 없고 구분하여 기록하지도 않았음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금액이 모두 출장비에 사용되었음을 [redacted]서장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4) 이와 같이 원고에게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있고, 여기에 증명할 대상의 성격과 증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출장비로 지출된 금액이 실제 출장비로 지출되었는지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 등을 한꺼번에 받고 이후에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산하지 않았고,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사실도 없음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이 출장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로부터 출장비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2

관한 영수증을 제출받은 사실도 없다.

③ 원고는 2012. 9. 5. [redacted]서장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비용지출내역과 개인회생·파산사건 출장비용 지출서를 제출하였으나, [redacted]서장에 따르면 이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거나 원고가 제출시점에 당초 작성날짜를 소급하여 만든 문서라는 것을 구두로 인정하였으므로(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위 문서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2. 9. 14. [redacted]서장으로부터 전산출력지출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항공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조사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출장비로 지출한 191,604,282 중 피고가 출장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55,580,000원을 뺀 136,024,282원 부분은 실제 출장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은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되어 사실상 그들의 급여나 상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

1)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출장비로 지출한 191,604,282 중 피고가 출장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55,580,000원을 뺀 136,024,282원 부분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제주세무서장이 과세대상으로 산정한 191,604,282원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후 [redacted]서장이 그 중 55,580,000원을 감액하여 근로소득세를 경정한 내역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2)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감액 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2

하여 본다.

3)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4)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redacted]서장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을 감액경정한 내역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로서는 제주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한 내역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당초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내역이나 계산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정확한 세액 산출이 어려운 점, ③ 이 경우 법원이 지방소득세 부과 내역, 과세표준 등을 다시 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는 원고가 제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유일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피고로서는 [redacted]서장의 감액 내역을 기초로 지방소득세를 감경하여 그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어 보인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명욱

판사 이승훈

판사 고소영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2

별지1

(단위 : 공급가액, 원)

귀속	월	실수중 금액 입력 내역				미신고금액	미신고 금액에 대한 원고 소명내역(율제5호중)		
		총 금액	호수	인지대①	송달료,기타 수수료②	①+②	송달료	기타비용	출장비
2008년	1월	31,574,000	18,150,000	576,000	12,848,000	13,424,000	6,015,620	550,500	6,281,880
	2월	23,960,000	13,750,000	680,000	9,530,000	10,210,000	3,889,780	764,600	4,875,620
	3월	40,460,000	23,100,000	1,284,000	16,076,000	17,360,000	5,998,740	1,875,300	8,201,960
	4월	43,830,000	24,750,000	1,020,000	18,060,000	19,080,000	7,324,650	1,458,930	9,276,420
	5월	38,710,000	22,250,000	740,000	15,720,000	16,460,000	4,427,900	1,395,540	9,896,560
	6월	33,130,000	18,700,000	848,000	13,582,000	14,430,000	5,489,780	1,318,000	6,774,220
	7월	28,360,000	16,500,000	750,000	11,110,000	11,860,000	5,571,700	1,141,680	4,396,620
	8월	25,760,000	14,850,000	684,000	10,226,000	10,910,000	5,164,376	1,040,260	4,021,364
	9월	41,270,000	23,100,000	1,014,000	17,156,000	18,170,000	6,660,820	914,770	9,580,410
	10월	28,850,000	16,500,000	780,000	11,570,000	12,350,000	6,698,200	861,850	4,009,950
	11월	23,381,000	13,750,000	710,000	8,921,000	9,631,000	5,431,740	322,380	3,166,880
	12월	43,460,000	24,750,000	1,080,000	17,630,000	18,710,000	6,647,440	1,230,090	9,752,470
	소계	402,745,000	230,150,000	10,166,000	162,429,000	172,595,000	69,320,746	12,873,900	80,234,354
2009년	1월	20,315,000	11,550,000	552,000	8,213,000	8,765,000	5,102,500	418,250	2,692,250
	2월	23,130,000	13,200,000	588,000	9,342,000	9,930,000	4,769,640	879,663	3,693,297
	3월	25,850,000	15,240,000	712,000	9,898,000	10,610,000	5,044,681	570,740	4,282,579
	4월	24,760,000	14,700,000	620,000	9,440,000	10,060,000	5,454,680	559,980	3,425,340
	5월	19,160,000	11,000,000	550,000	7,610,000	8,160,000	4,011,120	1,058,580	2,540,300
	6월	30,150,000	17,050,000	752,000	12,348,000	13,100,000	6,195,944	478,760	5,673,296
	7월	25,240,000	13,750,000	410,000	11,080,000	11,490,000	5,688,360	673,960	4,717,680
	8월	18,990,000	10,680,000	248,000	8,062,000	8,310,000	4,486,550	560,480	4,014,970
	9월	25,410,000	14,000,000	560,000	10,850,000	11,410,000	3,968,990	888,590	5,992,420
	10월	17,850,000	10,450,000	488,000	6,912,000	7,400,000	3,353,700	798,790	2,764,510
	11월	25,040,000	13,200,000	378,000	11,462,000	11,840,000	4,462,940	909,670	6,089,390
	12월	31,010,000	16,650,000	510,000	13,850,000	14,360,000	5,110,280	389,170	8,350,550
	소계	285,905,000	161,470,000	6,368,000	119,067,000	125,435,000	57,649,385	8,181,623	54,236,582
2010년	1월	17,150,000	9,350,000	274,000	7,526,000	7,800,000	3,042,360	287,690	4,195,950
	2월	25,100,000	13,700,000	560,000	10,840,000	11,400,000	4,196,060	295,200	6,348,740
	3월	28,538,000	15,746,000	626,000	12,166,000	12,792,000	4,974,000	332,500	6,859,500
	4월	23,690,000	13,700,000	528,000	9,462,000	9,990,000	3,827,900	395,300	5,239,720
	5월	20,690,000	12,100,000	704,000	7,886,000	8,590,000	3,152,083	153,000	4,580,917
	6월	18,490,000	9,900,000	516,000	8,074,000	8,590,000	3,201,740	294,600	4,577,660
	7월	20,200,000	11,550,000	552,000	8,098,000	8,650,000	3,228,101	254,000	4,615,899
	8월	13,820,000	7,150,000	326,000	6,344,000	6,670,000	3,503,880	166,500	2,673,620
	9월	13,470,000	7,700,000	238,000	5,532,000	5,770,000	2,011,860	127,500	3,392,640
	10월	21,460,000	12,650,000	496,000	8,314,000	8,810,000	4,057,340	350,600	3,906,060
	11월	24,300,000	13,750,000	440,000	10,110,000	10,550,000	4,203,700	158,400	5,747,900
	12월	21,466,000	11,550,000	582,000	9,334,000	9,916,000	4,037,360	301,900	4,994,740
	소계	248,374,000	138,846,000	5,842,000	103,686,000	109,528,000	43,436,384	3,117,190	57,133,346